

#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제공... '사파리·크롬' 도 가능

[연 말 정산]

### 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의료비 공제자료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 알려야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출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여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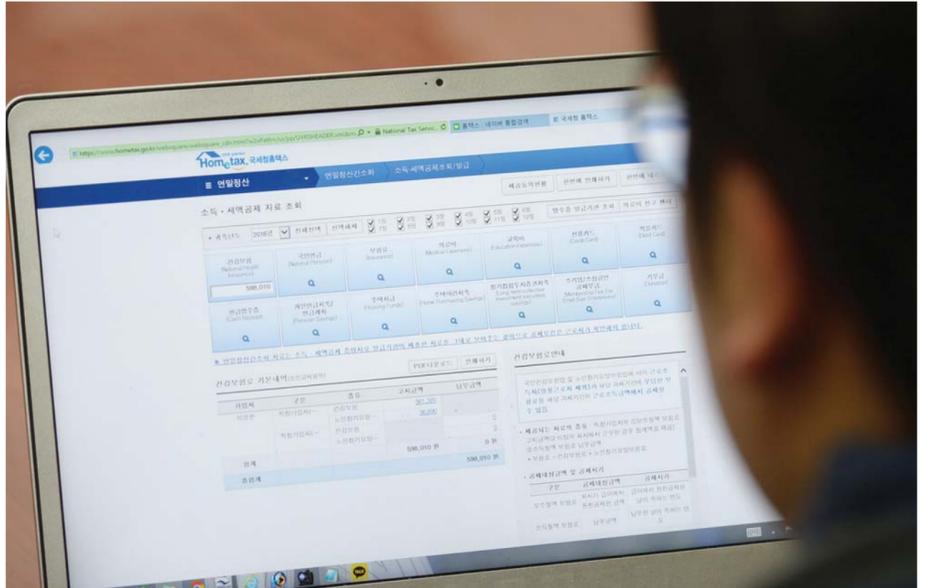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 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공인



| 회사→홈택스      | 2017년12월26일~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위한 기초자료 등록 (기급적 1월중순까지 등록)   |
|-------------|--------------|--|
| 홈택스→근로자     | 2018년1월15일~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 근로자→홈택스     | 1월15일~17일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 홈택스→(근로자)회사 | 1월18일~       |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
| 홈택스→근로자     | 1월20일~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정제공 영수증 발급기간이 1월15일~18일 수정제출 |
| 회사→홈택스      | 2월1일~3월12일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유의사항**

1. 중소기업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 대상금액 포함 제공
2. 학자금 대출 교육비 납부→원리금 상환 시점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
3.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4. 모바일(앱)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 가능

자료:국세청

인증·자료 출력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도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 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제공한다.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학(원)

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된다.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하거나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

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뉴스스

## 예상세액 미리 계산해볼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8일 개통

### 연말정산 결과 알려주기 전 간편 계산·확인도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부터 개통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 오전 8시부터 제공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 등 작성에 입력·반영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월세액 자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청서 의료비,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등도 조회되지 않는다.

이들 항목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통기, 월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과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역구관미리방조정문직립 전인 062/224-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

##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